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
2019.1.21(월)12:00

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1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농업, 농업인, 농업경영체, 청년농업인, 농업법인에 대한 정의(안 제 2조)
- 나.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다. 안 제4조의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(안 제5조)
- 라.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- 마.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·검사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'은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.